[별지 제1호의 3서식] <개정 2019.4.1>

# 금융정보 등(금융신용보험정보) 제공 동의서

1.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					
관 계		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 등)		
					-
2.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(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) ※ 유의사항: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.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한글 정자 서명 또는 무인(인감 포함)으로 대신합니다.					
세대주와의 관 계	동의자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 등)		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<sup>1)</sup> (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·인감)	금융정보등의 제공 2) 사실을 동의자에게 3) 통보하지 아니함 (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·인감)
			-		
			_		
			-		
금융정보 보건복지 구청장• 위탁업무 2) 보건복지	등을 부장관・국토교통부장 특별시교육감・광역시 수행 기관장 포함, 이 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	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 관·교육부장관·여성가족부 교육감·특별자치시교육감· 하 '보건복지부장관 등' 0 한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정 1등록번호, 계좌번호를 제공당	장관 • 특 도교육[  라 한디 당계좌번호	특별자치시장 • 특별 남 • 특별자치도교육 H)에게 제공하는 것 호의 진위 여부 확인	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 감(관련법에 따른 l에 동의합니다.
동의합니다	다.(만일 동의하지 않으 됩니다. 단, 기초연금:	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/ 2면,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의 경우는 별첨서식 「금융정!	등의 제	공사실을 정보제공	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
3.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,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: 뒷면 참조 4.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: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전(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)까지,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 상실 전까지					
5. 정보제공 목적: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,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, 「기초연금법」,「장애인연금법」,「긴급복지지원법」,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,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,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,「아이돌봄지원법」,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,「초·중등교육법」,「의료급여법」,「주거급여법」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·확인조사 지원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					
열 열					
금융기관장 • 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					

# 금융기관 등의 명칭

- 1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
  - 1)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
  - 2)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  - 3)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  - 4)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
  - 5) 「한국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은행
  - 6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·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· 증권금융회사·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
  - 7)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
  - 8)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
  - 9)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
  - 10)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
  - 11)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
  - 12)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
  - 13) 「우체국예금・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
  - 14)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
- 2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: 전국은행연합회 등

### 금융정보 등의 범위

#### 1. 금융정보

- 1) 보통예금, 저축예금, 자유저축예금,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: 3개월 이내 평균 잔액
- 2) 정기예금, 정기적금,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: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
- 3) 주식, 수익증권, 출자금, 출자지분, 부동산(연금)신탁 : 최종 시세가액
- 4) 채권, 어음, 수표, 채무증서, 신주인수권증서, 양도성예금증서: 액면가액
- 5) 연금저축 :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
- 6) 1)부터 5)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
- 2. 신용정보
  - 1)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
  - 2)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
- 3. 보험정보
  - 1) 보험증권 :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
  - 2) 연금보험 :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

## 유의 사항

-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**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** 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2조제8항,「기초연금법」 제11조4항,「장애인연금법」 제9조제8항,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의3제3항, 「주거급여법」 제14조「아이들복지원법」제24조제3항,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12조의4,「아동수당법」제7조의6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.
- 이 동의서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5조,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1조,「기초연금법」 제10조 「장애인연금법」 제8조 및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1조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0조의2,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5,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의3제2항,「주거급여법」 제9조,「아동수당법」제6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.
  - 향후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3조 및「기초연금법」 제11조제2항,「장애인연금법」 제11조,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의3제3항,「주거급여법」 제11조,「아동수당법」제7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**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**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동의자(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)의 금융정보등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, 「기초연금법」 제12조의 제6항,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13조제7항, 「장애인연금법」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항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2조의3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0조의제3제6항, 「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」 제15조제6항, 「의료급여법」제3조의3제3항,「초·중등교육법」제60조의6,「주거급여법」제15조제6항,「아동수당법」제8조의 6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,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54조에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